
2020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모사업 안내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여가와 놀이】

아동은 충분히 쉬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모든 아동들이 존중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개선과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아동옹호대표기관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합니다.”





**어디서든
우리 아이들 곁에,
국내 네트워크**

19개 지역본부와 31개 복지관 · 가정위탁 지원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직영기관 (아동옹호센터 등)을 통하여 아동옹호를 위한 재단만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을 돕는
대표 아동복지
전문기관**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의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쌓아온
아동복지 노하우**

1948년 문을 연 이후 지난 70년 간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일하고
신뢰받는 기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 · 배분을 진행하고 사용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며,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및 국세청 기준에 따라 결산 내역을 대외공시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아 2016년 ‘제8회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보호정책

가. ‘아동보호정책(Child Safeguarding Policy)’이란?

재단은 미션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아동, 가족,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포함한 11개국의 아동 중심 NGO들의 연합체인 국제어린이재단 연맹(이하, ‘연맹’)은 2016년 11월 ‘Keeping Children Safe’에 가입하고 ‘아동보호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연맹 회원국은 이를 준수하여 정책을 도입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정책(Child Safeguarding Policy)’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아동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아동권리를 보호한다는 재단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나. 아동보호정책 대상

재단과 관련된 모든 사람(재단 이사, 임직원,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사회 및 임직원(재단 이사 및 임직원을 제외한 아래의 대상자는 ‘관련자’라 함.)	
• 인턴(근로장학생 등) 및 실습생	• 후원자(개인, 기업, 단체 등)
• 사회복지무요원	• 자문단 및 자문 위원
• 자원봉사자	• 재단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
• 협력기관 및 소속직원	• 언론인 및 미디어 관련자
• 홍보대사(나눔대사 등) 및 후원회	• 기타 관련자

다. 아동보호정책 핵심개념

아동보호	아동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조직 차원의 정책, 절차 및 이의 이행
아동	정책의 목적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의 관련 법규가 정한 바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협력기관	아동을 위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재단과 함께 일하며, 아동의 정보를 다루거나 아동과 직접 대면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직원 포함)
위험 (아동폭력)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 및 발달에 위험을 가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아동을 방임 및 유기하거나, 체벌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포함
적용분야	직원 채용, 교육 및 훈련,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아동정보보호, 아동과의 교류활동,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라. 아동보호정책 행동강령

-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동권리의 보호를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둔다.
- 아동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의견을 경청한다.
- 아동이 관련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하에 수행하고, 아동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최소화한다.
- 아동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지원의 조건으로 아동에게 재단의 아동보호정책에 위반되는 요구를 하거나, 뇌물 혹은 선물을 받지 않는다.
- 정책에 위반하는 자료를 취급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
- 정책 및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사안을 보고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고한다.

2. 2020년 공모사업 안내

가. 공모사업 목적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기관과 연대 및 협력하여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 대응**

※ 재단의 복지사업방향 및 추구가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복지사업을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직접적인 문제해결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무 이행자가 책무를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나. 2020년 공모사업 개요

1) 사업주제: 아동성장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놀이환경개선 지원 사업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문화 환경 개선」

-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미등록이주아동, 시설아동, 장애아동 등 사각지대아동)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성별, 계층, 인종, 장애 등 주어진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충분한 관심과 이해에 맞는 놀이·문화 공간 마련을 돕고,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특히 미등록이주아동, 시설아동, 장애아동 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각지대아동을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함.

* 사업계획 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개발한 「아동참여 놀이터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

2) 사업방향

-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고, 공모 주제를 기반 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성별, 인종, 장애 유무 등 차별 없이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권리기반사업
- 공모 주제 범주에 맞는 창의적이고 실험성을 가미한 사업
-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 재단 사업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와 연대 및 협력하는 사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기관의 규모, 형태와 상관없이 재단의 추구가치를 함께 하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

3) 신청대상: 아동을 주 대상으로 비영리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① 놀이·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유휴 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마련계획이 있어야 함
- ② 유휴 공간 전방에 놀이시설(공간)이 없거나, 아동에게 위험을 주는 경우,
아동의 안전한 놀이 환경개선을 위해 신청할 수 있음.
※ 위험이란 (1) 낙후된 시설로 인해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주는 경우
(2)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아동에게 환경적 위험을 주는 경우
(3) 공간에 비해 이용빈도 및 아동밀도가 높은 경우
- ③ 세팅된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활용 및 관리 의지가 있어야 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수행을 지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예시

- 아동의 연령과 발달정도에 적절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 및 활동이 필요한 기관
- 시설아동들이 시설 및 지역사회 내에서 또래들과 어울리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 및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기관
- 놀이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기회가 부족한 지역(도서산간 등)의 아동들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기관
- 유휴 공간 전방에 놀이공간이 없거나, 놀이공간이 아동에게 위험을 주는 경우

4) 신청 제외대상

- 동일사업으로 2018~2019년 재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배분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관 (연속지원을 받는 기관은 신규지원사업 신청 불가)
-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사업 또는 기관
- 법령상 금지된 영역의 사업 또는 유사사례로 법적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
- 정부 및 지자체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영리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기관
- 기관(단체)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5) 사업기간

구분	사업기간
신규지원사업	2020. 01. 01. ~ 2021. 12. 31. (2년)
연속지원사업	2020. 01. 01. ~ 2020. 12. 31. (1년)

6) 사업내용 및 신청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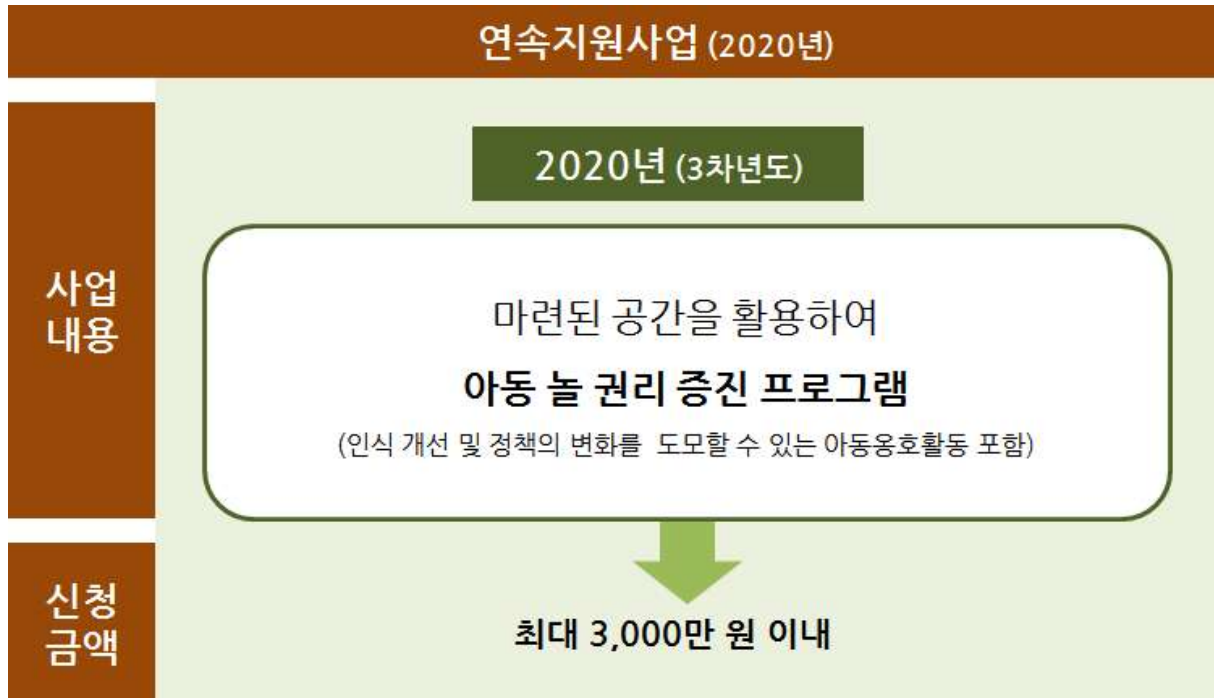
가) 신규지원사업



■ 신규지원사업 신청 시, 참고사항

- 1차년도의 놀이·문화 공간 마련은 아동이 놀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시작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는 단계에 아동들의 참여와 의견반영을 통해 진행되어야 함. 이와 같이 진행하기 위해 아동참여 프로그램(아동권리교육, 아동의견수렴 활동, 놀이공간에 대한 디자인회의, 선진지 견학, 아동위원회 조직, 사업설명회 등)이 필수 포함되어 진행하여야 함.
(‘아동참여 놀이터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자 참고)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 공간 설치 및 관련물품 구입)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총 신청 사업비의 20%이상 필수 책정해야 함.
- 2차년도는 마련된 공간을 활용하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진행하며, 특히 놀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놀이 관련법과 조례를 아동중심으로 개정 및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등 정책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아동옹호활동을 포함하여 진행함.
- 사업계획서에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1차년도(2020년)에 마련한 공간 활용 및 2차년도(2021년)에 수행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하여 2차년도 사업을 연속지원 할 계획이며, 연속사업 진행은 필수임.
2021년 세부계획은 사업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추후 다시 받을 예정임.

나) 연속지원사업



■ 연속지원사업 신청 시, 참고사항

- 연속지원사업은 2018~2019년도 공모사업을 수행 중인 12개 지원기관만 신청 가능함.
- 3차년도는 마련된 공간을 활용하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진행하며, 특히 놀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놀이 관련법과 조례를 아동중심으로 개정 및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등 정책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아동옹호활동을 포함하여 진행함.
- 공모사업 지원 종료 후 지역사회 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함.

※ 사업계획 과정에서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 관점 및 수행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 후 제출

■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 수행원칙 및 점검 체크리스트

원칙	질문사항
아동중심	- 아동을 권리주체자로 존중하는가? - 아동들에게 권리주체자임을 알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 아동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장애물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책무성	-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 원인까지 감안하는가? - 의무이행자가 누구인지 구분하였고, 그들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는가? - 의무이행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비차별	- 프로그램 참여 아동을 선정하는 과정에 차별요소가 없는지 검토하였고, 차별요소 없이 아동을 선정하였나? - 아동들의 이용 및 접근성을 감안하였는가? - 아동의 성별, 종교, 성적지향, 장애, 출신 등의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아동최상의 이익	- 프로그램 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 진행 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과 충돌되는 상황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 했는가?
아동발달	- 아동의 연령 및 개별적 특성이 고려되었는가? - 아동의 연령 및 개별적 특성에 맞는 활동과 자원이 연계되었는가?
참여	- 아동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는가? - 아동들이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가? - 아동의 의견을 진지하게 반영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반영한 내용을 아동에게 공유하였는가?
아동친화적 환경	-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되는가? - 개선된 아동친화적 환경요소는 무엇인가?
파트너십	- 아동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칠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대활동을 포함하였는가? - 프로그램 진행 시 연대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다. 진행일정



* 진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진행일정
공모사업 신청	① 신청기간: 2019년 08월 26일(월) ~ 2019년 10월 04일(금) 18:00 마감 ② 제출방법: 제출서류는 개별 PDF로 변환하여 이메일 제출 greencf@childfund.or.kr ③ 제출서류 (1) 신청공문 (직인필수) (2) 사업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고유번호증 또는 시설신고증(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기관의 서류제출) (5)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④ 제출양식: 첨부서류 참조 ⑤ 참고사항: 접수 후 3일 이내 신청기관으로 접수완료 알림 메일발송 예정
사업 설명회	① 일 자 : 2019년 09월 04일(수) 14:00 ~ 16:30 ② 장 소 : 서울시청 지하2층 태평홀 ③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하단 공지사항 내 '2020년 공모사업 안내' 클릭 후 사업설명회 신청서 작성 제출 (https://forms.gle/vu38snjUSQmRoh846) ④ 신청기한 : 2019년 09월 01일(일) 까지 ⑤ 참고사항 - 기관 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 - 사업설명회 참석 시, '공모사업 안내책자' 및 아동중심의 놀이터조성을 위해 재단이 개발한 '아동참여 놀이터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자 제공 - 9/2(월) 접수완료 (문자 또는 이메일) 예정

심사	① 일 자 : 2019년 10월 07일(월) ~ 2019년 11월 30일(금) ② 심사과정 : ▣ 서류심사 (기초심사 + 1차 심사) ▣ 1차 발표 (11/01(금) 재단 홈페이지 발표 예정) ▣ 현장실사 및 2차 심사 ▣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최종회의 ▣ 최종 선정발표 ③ 참고사항 - 현장실사는 일부 기관에 해당 - 해당권역 재단 지역본부의 의견을 최종 심사에 반영
최종 선정발표	① 일 자 : 2019년 12월 6일(금) 예정 ② 방 법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③ 참고사항 : 이후 사업 및 예산조정이 진행될 수 있음
협약식	① 일 자 : 2019년 12월 17일(화) 예정 ② 참고사항 : 선정기관 대상 일시 및 장소 추후 안내
지원기관 담당자 교육	① 일 자 : 2020년 1월 중 ② 교육내용 : 재단의 복지사업 이해, 아동권리 및 아동옹호사업 이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수행 관련 경험 및 정보 ③ 참고사항 - 선정기관 담당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라. 심사기준

구분	심사항목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책임감, 수행능력
사업 적합성	사업방향 및 주제와의 적합성, 사업의 필요성, 변화의 가능성
실현 가능성	연도별 수행계획, 사업의 구체성, 지역사회 연대계획
사업 준비성	예산구성의 타당성, 대응계획
재단과의 연계성	신청사업과 재단의 가치와의 부합정도, 연대 및 협력의 가능성

마. 공모사업 신청 시 주의사항

- 1)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수행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 2) 신규지원사업은 2차년도 연속진행이 필수이므로 사업계획서에 1,2차년도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함.
- 3) 예산수립 시 의무 자부담 비율은 없으며, 신청금액 중 사업비(직접 비용)는 전체 예산 중 70%이상을 책정,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간접 비용)는 30% 이내로 책정함.
(인건비 및 운영비 책정은 필수사항 아님)
- 4)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후원금 지원 및 단순 물품지원 형태의 사업 및 예산수립 불가함.
(대상자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포함)

바. 기타 행정사항

- 1) 재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계획을 근거로 사업수행 및 집행하여야 함.
- 2) 사업수행 과정 중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의 일부 조정이 발생하면 재단의 사전승인 후 시행함.
- 3)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중단, 환수 등의 조치와 더불어 향후 5년 간 재단 공모사업 신청 불가함.
- 4) 재단은 신청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재단 지역본부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하여 최종심사에 반영함.
- 5) 제출된 서류는 공모사업 심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음.